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「자율관리어업육성및지원에
관한법률시행령」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,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, 제8조에 따른 기술교류 및 홍보, 제11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평가 업무 위탁기관의 범위를 현행 ‘민간단체’에서 ‘민간단체, 공공기관 등’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관련 조항 정비

- 1) 제8조제2항의 “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3조”를 “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”으로 변경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「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일부개정령안

「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”을 “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(생 략)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단체 또는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1. ~ 4. (생 략) ③ (생 략)	제8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----- 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535